

관계기관 의견조회

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
일부개정령안

외 교 부
기 획 조 정 실
인사기획관실

1. 개정이유

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,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업무지시 근거 마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재외동포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”을 “제1항 각 호의”로 한다.

1.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
2.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서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·절차·요건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직접 공관장을 통해 처리하는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제15조(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)	제15조(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)
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<u>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</u> 그러하지 아니하며,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. 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<신 설>	1. <u>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</u>
<신 설>	2. <u>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서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·절차·요건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직접 공관장을 통해 처리하는 사무</u>
②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<u>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</u> 그러하지 아니하며,	②----- ----- ----- ----- 제 1항 각 호의 ----- ----- -- -----

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